# [ 용역 계약서 ]

1. 계 약 명	잼톡 앱
2. 계약금액	<b>일금 일천오십만원정 (10,500,000원)</b> [VAT별도] - 지급조건은 세부계약 내용 참조
3. 용역기간	2022.5.18 ~ 2022.8.30
4. 기타 사항	- 작업진행은 상호협의 진행한다.
5. 용역대금	대금지급조건 : 현금 지급(부가세 별도) 대금지급방식 : 선금 30% / 중도금 30% / 잔금 40% 세금계산서 발급 후 5일 이내 지급
6. 하자보수	용역 완료 후 1년 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하자보수

# 2022년 5월 16 일

"갑", "을" 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본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 명날인 후 상호 1부씩 보관한다.

(갑) ㈜케이블러썸	(을) 김상우
488 - 86 - 00937	930610-1711116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 1414호	충남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 102동 1103호
대표이사 이 선 교(1)	्रे <b>ं</b>

# 제 1조 (목 적)

본 계약은 "잼톡 앱 개발 용역"을 위해 "갑"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을"과의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용역의 범위)

1.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잼톡 앱"을 위한 내용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용역의 범위: "간" 이 요청하는 화면기획서 기준 협의된 업무내역

2. "갑"은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수행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가는 별도의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한다. "을"은 개발 일정에 대한 통보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을 "갑"에게 요청하고 이에 "갑"은 대금 지불을 이행한다.

# 제 3조 (용역대금)

- "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갑"은 "을"에게 금 일금 일천오십만원 정
  (₩ 10,500,000) (이하 "계약금액", VAT 별도라 한다) 을 지급한다.
- 강성
- 2.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을 위해 제3자로부터 별도 구매가 필요하다고 "갑" 또는 을이 상호 인정한 상용 프로그램, 음악 파일 등을 포함한 각종 제품과 용역(이하 "상용 프로그램 등"이라 한다)의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며, 전항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4조 (대금지급)

"을"은 "갑"에게 계약금과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지급조건 : 현금 지급(부가세 별도)

대금지급방식 : 선금 30% / 중도금 30% / 잔금 40%

세금계산서 프로젝트 끝난 후 5일 이내 발급

# 제 5조 (용역수행기간)

1. "을"의 용역수행기간 전체 일정은 2022.05.18~2022.8.30 까지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의 합의로 전항의 용역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6조 (추가비용에 대한 보존)

- 1. 제 2조에 의거하여 "갑"의 요구로 인하여 "을"의 개발 범위를 초과하여 용역 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을"의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 2. 전항의 경우 "을"은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갑"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3.

# 제 7조 (상호 협조)

- 1. "갑"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환경 및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십 과 "을"은 주1회 협의하여야 한다.
- 2. "을"은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용역 수행과 관련된 "갑"의 의견 및 요청사항 등을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갑" 과 "을" 은 본 계약 및 부속 합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신의성실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의 조정 한다.

#### 제 8조 (자료제공)

- 1. '을"이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 극 현조하여야 한다.
- 2. "을"은 "갑"이 그 목적을 한정하여 사전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갑"이 대여한 자료를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 9조 업무보고 및 승인

- 1. "을'은 일정에 따라 "갑"에게 매월 진행한 업무 내역에 대한 월간보고를 해야 하며, "갑"은 본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 진행에 대한 승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갑" 이 업무보고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거절서를 즉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갑"으로 부터 승인 거절서를 받은 경우 "을"은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재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 승인 요청과 관련한 기준, 절차 및 승인 간주는 본 조의 규정에 따른다.
- 4.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이 업무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갑" 이 "을" 로부터 업무보고 승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수일 이내에 승인서나 거절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나. "갑" 이 교부한 업무보고 승인 거절서에 검수기준에 미달하는 항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제 10조 (인도 및 설치)



- 1. 매월 진행 요청업무는 "갑"의 승인 완료 후 "을"은 즉시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최종 산출물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2. "을"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각종 자료를 최종산출물 인도와 동시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3. "을"은 "갑"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인도 및 설치의 인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이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본 조의 의무를 면한다.

#### 제 11조 (지적재산권 등)

- 1. "을"이 유지보수 용역수행을 통해 생성하여 인도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재산권 및 지적 재산권, 프로그램 등 은 "갑"에게 있다. 다만, 현행법상 제 3 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용역수행과정에서 사용한 상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관계는 상용 프로그램의 판매자와 "갑" 또는 "을"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다.
- 3. 제3자로부터 구매한 상용 프로그램 등의 사용으로 인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갑"은 손해를 입은 제 3 자로부터 "을"을 면책 시켜야 하며, "갑"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을"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

# 제 12조 (하자보수)

- 1. "갑"의 요청에 의한 개발 용역에 대한 산출물에서 에러발생 및 원상복귀가 필요한 하자에 대해서 "을"은 하자보수책임을 진다.
- 2. "을"은 베타 서비스 전 갑이 QC 및 QA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을은 베타 서비스후 45일안에 모든 수정을 완료해 주어야 한다.

### 제 13조 (계약의 해제)

-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2. 파산, 회사정리 등 명백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 14조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 및 손해배상)

- 1. 제 13 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 제 9 조에 따라 매월 완료보고가 승인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 2. 본 조 1 항의 경우,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갑"은 매월 완료보고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 제 4 조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을"은 "갑'이 매월 완료보고를 승인한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기성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 3. 개발 기간이 늦어 질 경우 하루당 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만큼으로 계산한다.
- 4. 일방의 계약 해지시 계약금 및 지급된 금액 만큼 계약해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5조 (비밀유지)

일방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제 16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 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